

호주제 폐지! 평등사회로의 일보 전진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운동 본부

www.lawhome.or.kr

전화 (02) 780-5688-9 팩스 (02)780-0485

-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전화와 e-mail을 보내 민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호주제 불만 피해사례 신고 및 호주제폐지 후원단 가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운동

본 부 (02) 780-5688-9

지 부

강릉지부	(033)652-9555	원주지부	(033)731-4336
거제지부	(055)687-7869	익산지부	(063)851-0265
광주지부	(062)527-0011	인천지부	(032)438-1114
군산지부	(063)442-1560	전주지부	(063)244-2930
대구지부	(053)745-4501	정읍지부	(063)535-3705
대전지부	(042)520-5258	진주시부	(055)746-7988
동해지부	(033)535-0188	춘천지부	(033)257-4688
목포지부	(061)273-2514	태백지부	(033)554-4003
부천시부	(032)667-2314	평택 안성지부	(031)611-4251
청주시부	(043)257-0088	동두천시부	(031)866-0009
수원지부	(031)243-4600	구리 남양주시부	(031)551-9976
성남지부	(031)707-6661	창원 마산지부	(055)261-0280
신당동지부	(02)2238-6554	천안지부	(041)577-3680
안동지부	(054)856-4200	부평지부	(032)514-1112
울산지부	(052)246-9568	순천지부	(061)753-9910
제 주	(064)756-4006		
부 산	(051)469-2987		

호주없는 가정, 민주가정

호주제 없는 사회, 평등사회

호주제 없는 나라, 인권국가

호주제 폐지운동을 후원합시다

호주제 폐지 후원금 통장

농협 367-01-03743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없는 평등세상, 함께누릴 밝은미래

**우리
평등하게
살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50-8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여성백인회관

전화 02-780-5688~9 팩스 02-780-0485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I.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호주제는 성차별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제는 남성 중심으로 호주를 승계하도록 하여(민법 제984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합니다 혼인외의 아들이 딸보다 우선하여 호주가 되며, 나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 할머니 누나보다 우선하여 호주가 됩니다 이는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2. 부부평등, 부모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혼인하면 남편의 가(家)에(민법 제826조 제3항), 자녀는 출생하면 아버지가(家)에 입적하도록 하여(민법 제781조 제1항), 여성을 남성의 예측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3. 호주제는 실제 가족의 모습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주제는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호적을 함께 하는 사람만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결혼한 딸과 부모, 이혼한 어머니와 자녀 등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닙니다



4. 완고한 부성강제원칙이 우리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강제주의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자녀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와 성이 다르게 된 자녀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5.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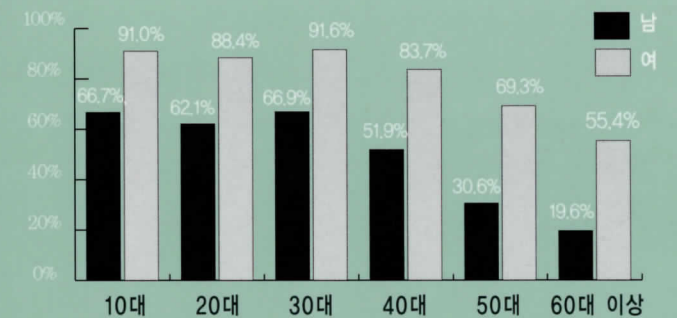
현행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전통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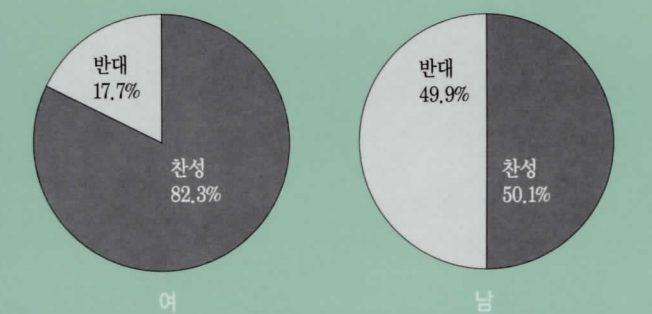
II. 호주제 폐지, 국민들이 원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03년 4월 16일부터 한달간 전국적으로 9593명을 대상으로 호주제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66.2%에 달한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3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찬성- 연령별



●호주제 폐지 찬성- 성별



● 호주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연령별로는

10대 <남 66.7%, 여 91.0%>, 20대 <남 62.1%, 여 88.4%>

30대 <남 66.9%, 여 91.6%>, 40대 <남 51.9%, 여 83.7%>

50대 <남 30.6%, 여 69.3%>, 60대 이상 <남 19.6%, 여 55.4%>

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대가 높은 남성을 제외하고는, 호주제폐지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별로는 여성의 82.3%가 찬성한 반면 남성은 50.1%에 머물렀습니다.

여성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은 호주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겪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오해

① 호주제를 폐지하면 전통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의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호주제와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호주제는 지금처럼 남성 우선이 아니고 여호주도 가능하였고, 실제 가족의 모습을 호적에 기재하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남성 위주의 호주제는 일제가 식민통치시대에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이식시킨 것으로 우리의 전통이 아닙니다.

②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해체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주제에 의하여 실제상 한 가족이면서 법률상으로는 가족이 아닌 남남이 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법과 현실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다른 모순이 사라집니다.

③ 호주제를 폐지하면 족보도 없어지고 결국 뿌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적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이고,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로 둘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주제를 폐지한 이후에도 족보는 원하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존할 수 있습니다.

④ 호주제를 폐지하면 현재 쓰고 있는 성이 무조건 바뀔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만을 강제하는 것은 남계혈통만을 중요시한 결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자녀에게 아버지성만 강제하지 않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 성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호주제를 폐지하면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전산 인프라가 구축되어 단 2년이면 충분히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Ⅳ.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중 개정법률안

사 안	의원입법안(여성계안)	정 부 안
호주제폐지 여부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규정 삭제	○의원입법안과 동일
자의 성 결정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함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함.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혼인외 자의 성	○규정 없음(자의 성 결정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규정 불필요)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 전에 사용하던 성을 유지할 수 있음
자의 성 변경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음	○의원입법안과 동일
신분등록제	○추후 정부가 채택할 것을 권고	○개인별 신분등록부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요시 단계별로 형제자매, 조부모 등 검색 가능 ○호적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예정
시행시기	○공포후 1년 경과후	○공포후 2년 경과후

V. 새로운 신분등록제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표를 하나씩 갖는 것입니다.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며,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하고,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 분 등 록 표									
본 인	성 명	박일남 朴一男			배 우 자	성 명	주민번호		비 고
	주민번호	650501-1567123 (인)				이여인	650101-2234567(인)		이혼
	생년월일	1965년 5월1일 시 분				장오녀	640801-2891234(인)		
	본	김포	성별	남자					
부 모	구 분	성 명	주민번호		자 녀	구 분	성 명	주민번호	
	부	박선남	401211-1234567(인)			아 들	박일자	901011-1781234(인)	
	모	강이분	430111-2456789(인)			딸	박이자	960502-2912345(인)	
	양 부								
	양 모								
본 인 의 신 분 사 항	경기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에서 출생, 1965년 6월 20일 부 박선남 신고.(인)								
	1988년 5월 6일 이여인(650101-2234567)과 혼인신고.(인)								
	1991년 6월 7일 이여인(650101-22345674)과 협의이혼신고.(인)								
	1994년 8월 9일 장오녀(640801-2891234)와 혼인신고.(인)								
등록지									
구호적	본 적							호 주	
	서울 용산구 후암동 23							박일남	

Ⅵ.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① 호주제를 폐지하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합니다.

호주제를 폐지하면 호주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가'에 소속된 종속적인 관계의 가족 개념을 삭제하여 남성 중심,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제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②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주제는 '가' 계승을 남계혈통 우선으로 하고 있어 아들 선호 사상을 부추기며, 여아낙태에 따른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것이고 성비불균형 심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으로 사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편제하고 일생동안 신분변동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그 신분기록을 검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지만 단계별로 검색을 하게 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열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생활 침해문제를 상당부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④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제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 재혼으로 아버지와 자녀 성이 다른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몰아 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좀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⑤ 국제적 위상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1999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쳐 호주제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성강제조항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할 경우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